

일부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

최유리 · 서혜연¹ · 류은주² · 최은미[†]

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¹연세대학교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²센트럴병원 치과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Yu-Ri Choi, Hye-Yeon Seo¹, Eun-Ju Ryu², and Eun-Mi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Wonju 26495,

¹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Dental Biomaterials and Bio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Seoul 03722,

²Dental Clinic, Central Hospital, Siheung 15079,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2-month period from March 1 to May 1,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01 dental hygienis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on the awareness of the jurisprudence pertaining to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ver. 19.0 program. We found that 32.8%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Low awareness that result was due to "insufficient public relations effort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are inefficient in clinical settings. Of the dental hygienists, 75.9% replied that task distribution was unclear and 40.0% lacked awareness of the distribution of dentists' duties (40.0%). A total of 59.8% of respondents showe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medical jurisprudence seminars. Of the dental hygienists, 77.0% agreed with the insert dental hygienists under medical jurisprudence category. In conclusion,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dental hygienist jurisprudence need to be revised regarding job status.

Key Words: Awareness, Dental hygienists, Jurisprudence, Medical jurisprudence

서론

치과위생사는 1913년 미국의 Dr. Fonse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제도는 1948년 일본을 거쳐 196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학기술과에서 도입되어^{1,2)}, 당시에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교육 및 공중구강보건 교육을 통한 구강보건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진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제도와 같은 진료보조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³⁾. 그러므로 지식중심의

전문가 모형보다는 기술 중심의 보조자 모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보건의료인의 교육체계와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⁴⁾.

우리나라 치위생 학문은 1977년 초급대학인 2년제 전문학교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어 1979년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3년제 교육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고, 2002년부터 4년제 학부가 신설되어 현재는 전국 82개 대학에서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었다. 치위생학 박사학위 과정은 남서울대학교 동의대학교에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기술중심 교육에서 학문연구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선행

Received: October 27, 2016, Revised: November 25, 2016, Accepted: November 28, 2016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Eun-Mi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815 Gyeonhwon-ro, Munmak-eup, Wonju 26495, Korea
Tel: +82-33-738-1301, Fax: +82-33-738-1349, E-mail: emchoi@kduniv.ac.kr

Copyright © 2016 by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치위생표준교육과정안, 포괄치위생교육과정의 도입을 통해 치과위생사 교육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⁵⁻⁷⁾. 하지만 학교 교육과 직결되어야 할 임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분야와 관련 법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의 정의를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구강보건교육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하였다⁸⁾.

하지만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인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업무는 실제 임상에서는 등한시되고 있으며, 진료협조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간호조무사 업무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 역할분담이나 조정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⁹⁾. 과거 치과에서 주된 업무가 치료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치석제거가 건강보험화되고 나서는 예방관리에 힘쓰는 치과 의료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변화와 더불어¹⁰⁻¹³⁾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인 예방치과와 법적 업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11월 16일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업무를 8가지로 분류하고 행위분류를 30개로 상세히 나열함으로써 행위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위배되는 상황에 처해있게 되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영역 분쟁의 요지를 갖게 되어 두 번 유예 끝에 2015년에 시행되었지만, 실제수행업무와 의료기사법의 수행업무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개정된 의료기사법 인식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기사법을 기반으로 한 치과위생사의 본연의 업무영역을 정착시키고 추후 의료기사법 재개정의 기반의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로 서울, 경기 소재의 치과 1차병원 129기관, 2, 3차병원 72기관, 조사대상 기관수는 134개로 선정하였다. 치과위생사 212명

Table 1.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Technicians Jurisprudence Awareness

Characteristic	Division	Know (32.8%)	Don't know (67.2%)	Total	p-value ^a
Age (y)	≤24	21 (31.8)	23 (17.0)	44 (21.9)	0.008
	25 to ≤29	19 (28.8)	57 (42.2)	76 (37.8)	
	30 to ≤34	11 (16.7)	38 (28.1)	49 (24.4)	
	≥35	15 (22.7)	17 (12.6)	32 (15.9)	
Academic background	College	42 (63.6)	83 (61.5)	125 (62.2)	0.767
	University	24 (36.4)	52 (38.5)	76 (37.8)	
Career (y)	1 to 2	19 (28.8)	23 (17.0)	42 (20.9)	0.061
	3 to 4	13 (19.7)	29 (21.5)	42 (20.9)	
	≥5	15 (22.7)	53 (39.3)	68 (33.8)	
	≥10	19 (28.8)	30 (22.2)	49 (24.4)	
Job position	Staff	41 (62.1)	84 (62.2)	125 (62.2)	0.989
	Manager	25 (37.9)	51 (37.8)	76 (37.8)	
Type of workplace	Private dental clinic	44 (66.7)	85 (63.0)	129 (64.2)	0.607
	Hospital	22 (33.3)	50 (37.0)	72 (35.8)	
Annual income (10,000 KRW)	≤3,000	48 (72.7)	76 (57.1)	124 (62.3)	0.033
	>3,000	18 (27.3)	57 (42.9)	75 (37.7)	
Area	Seoul	34 (51.5)	95 (70.4)	129 (64.2)	0.009
	Gyeonggi-do and Incheon	32 (48.5)	40 (29.6)	72 (35.8)	
	Total	66 (100.0)	135 (100.0)	201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KRW: Korean won.

^a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chi-square test at $\alpha=0.05$.

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에게 한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설문조사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 11명을 제외한 201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자로 하였다(IRB no. 1041455-2016-06-HR-002-01).

2.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는 Kim과 Shin¹⁴⁾의 논문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여부,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견, 의료법 관심유무, 의료기사법 세미나 수강여부에 관한 11문항,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1.11.16])에서 치과위생사의 영역 (1) 치석 등 침착물 제거, (2) 불소도포, (3) 임시충진, (4)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제거, (5) 치아본뜨기, (6)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7)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8)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련 업무로 전체 30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유무, 교육 연한, 근무연차, 직위, 병원규모, 연봉, 지역을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19.0 K Program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양측검정 하였다.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의 영역이라고 맞게 응답하면 1점 틀리게 답하면 0점을 부여하여 총 30점 만점을 기준 측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 여부는 chi-square,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의견 및 현재 업무분담과 의료법 관심유무는 frequency,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인식도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s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 0.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929였다.

결 과

1.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 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아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조사의 모집

Table 2. The Opinion and Interest of the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Classification	Yes	No	Total
1. I know about the newly revised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66 (32.8)
1-1. Do you think newly revised medical jurisprudence is more appropriate?	28 (43.8)	36 (56.2)	64 (100.0)
1-2. Do you think it is helpful to work in a clinical?	21 (52.5)	19 (47.5)	40 (100.0)
1-3. Do you think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that is efficiency?	14 (35.9)	25 (64.1)	39 (100.0)
1-4. Do you think that's enough evidence-based?	24 (63.2)	14 (36.8)	38 (100.0)
1-5. Does it currently a dental hygienist, nursing assistants, and dental technician think of division of job status is clearly done in the dental clinic?	41 (20.5)	159 (79.5)	200 (100.0)
1-6. Have you ever attend to seminar on medical jurisprudence?	23 (11.4)	178 (88.6)	201 (100.0)
1-7. Do you think if you go to attend seminars on medical jurisprudence?	119 (59.8)	80 (40.2)	199 (100.0)
1-8. Do you agreement that revise dental hygienist into the medical jurisprudence?	154 (77.0)	46 (23.0)	200 (100.0)
2. I don't know about the newly revised medical technicians jurisprudence			162 (67.2)
2-1. If you do not know about the revised medical technicians jurisprudence, what is the reason?			
Lack of publicity	51 (37.8)		
Lack of interest	44 (32.6)		
Lack of awareness of jurisprudence	22 (16.3)		
The reality is no matter	16 (11.9)		
Etc	2 (1.5)		
Total	135 (100.0)		
2-2 ^a . Do you think that what is problem in the newly revised medical jurisprudence?			
It was not reflect the actual dental hygienist job status	23 (56.1)		
Acts were classified listed in detail too	8 (20.0)		
It was not reflected in the description of the physician assistant	7 (17.5)		
Dental hygienist did not the difference between other people	24 (58.5)		
Etc.	2 (4.9)		

Values are presented as n (%)

Analysis of frequency.

^aMultiple response.

단은 201명으로 대부분 여자(99.0%)이며, 평균연령 29.04±5.61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만 24세 이하(31.8%), 25~29세(28.8%), 35세 이상(22.7%), 30~34세(16.7%) 순이었다(p<0.05). 연봉이 3,000만원 초과(27.3%)한 그룹이 3,000만원 이하(72.7%) 그룹보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그룹(70.4%)이 경기 및 인천(29.6%)에 거주하는 그룹보다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p<0.05).

2.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한 관심과 의견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32.8%로 응답자 중 의료기사법 법 개정 전보다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더 적절하다는 43.8%였다. 그리고 입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52.5%), 근거기반이 충분하다(63.2%)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역할분담 측면에서 비효율적(64.1%)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외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79.5%). 그 이유는 업무분장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 의사의 인식부족(40.0%),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입지의 불확실성(27.7%),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인식결여(16.5%), 치과위생사의 인력부족(11.0%) 순이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의료법에 관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은 없으나(88.6%) 의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참여하고 싶다(59.8%)는 비율은 높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모른다(67.2%)라고 응답한 이유는 홍보 부족(37.8%), 관심 없음(32.6%), 법에 대한 인식부족(16.3%), 현실과 상관없음(11.9%) 순이었다.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부족한 점은 치과위생사와 치과 의사 및 조무사의 업무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58.5%), 실제 치과위생사 업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56.1%)이라고 생각하였다(Table 2).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에 관한 인식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 영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24세 이하(28.52±2.42), 35세 이상(25.81±4.43), 연차가 낮을수록 1~2년차(28.50±2.45), 10년차 이상(25.55±6.21) 치과위생사 고유업무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p<0.05). 또한 평사원(28.34±3.10)이 실장급 이상 관리직(26.22±5.88)보다, 연봉이 낮은 그룹(28.14±3.62)이 높

은 그룹(26.65±5.40)에 비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인식도가 높았다(p<0.05).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관련 세미나 수강여부

본 논문의 모집단에서 의료기사법 관련 세미나를 수강한 사람은 11.4%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의료기사법 세미나 수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에서는 35세 이상인 그룹이 세미나를 들은 경험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24세 이하(p<0.05), 25세 이상부터 29세까지 21.7%로 동등하게 조사되었으며, 30세부터 34세까지 17.4%로 가장 낮았다. 경력은 10년 이상 43.5%, 3~4년차, 5년 이상 각각 26.1%, 1~2년차 4.3%(p<0.05)로 근무 경력이 길수록 세미나 경험비율이 높았다.

고 찰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하여 치과의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강영역의 전문적인 지식

Table 3.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Technicians Jurisprudence of Awareness

Characteristic	Awareness	p-value*
Age (y)		0.014
≤ 24 (n=42)	28.52±2.42 ^a	
25 to ≤ 29 (n=64)	28.34±3.58 ^a	
30 to ≤ 34 (n=39)	26.48±2.89 ^a	
≥ 35 (n=27)	25.81±5.52 ^a	
Career (y)		0.003
1 to 2 (n=36)	28.50±2.45 ^a	
3 to 4 (n=37)	28.81±2.36 ^a	
≥ 5 (n=54)	27.77±4.30 ^{a,b}	
≥ 10 (n=45)	25.55±6.21 ^b	
Job position		0.002
staff (n=109)	28.34±3.10	
manager (n=63)	26.22±5.88	
Annual income (10,000 KRW)		0.033
≤ 3,000 (n=103)	28.14±3.62	
> 3,000 (n=67)	26.65±5.40	
Total (n=127)	27.56±4.4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p<0.05,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30 point scale.

^{a,b}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post-hoc Scheffe's test at α=0.05.

Table 4.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ttend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Seminar

Characteristic	Yes	No	Total	p-value ^a
Age (y)				0.011
≤24	5 (21.7)	39 (21.9)	44 (21.9)	
25 to ≤29	5 (21.7)	71 (39.9)	76 (37.8)	
30 to ≤34	4 (17.4)	45 (25.3)	49 (24.4)	
≥35	9 (39.1)	23 (12.9)	32 (15.9)	
Career (y)				0.046
1 to 2	1 (4.3)	41 (23.0)	42 (20.9)	
3 to 4	6 (26.1)	36 (20.2)	42 (20.9)	
≥5	6 (26.1)	62 (34.8)	68 (33.8)	
≥10	10 (43.5)	39 (21.9)	49 (24.4)	
Total	23 (100.0)	178 (100.0)	201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a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Fisher's exact test at $\alpha=0.05$.

을 갖춘 치과위생사는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외에도 치과 진료보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채 과거의 치과진료보조자 역할에만 정체되어, 치과위생사 고유업무를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의료기사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재해석하였지만, 행위분류를 상세히 나열함으로써 그 외에 업무는 위법이라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 여부 확인결과 의료기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치과위생사가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치과위생사에 비해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그룹일수록 의료기사법의 인식도가 높게 나온 결과는, 치위생(학)과 재학 시 의료관계법규라는 과목을 이수하므로, 비교적 학교 교육을 최근에 받은 치과위생사들이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도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되고 2015년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전체 인식도는 32.8%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치과위생사들은 의료기사법 적절성에 대한 응답으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의료기사법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분담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개정된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의료기사법 관련 업무 8가지와 하위 행위분류 30가지¹⁵⁾로 제한한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

사의 실제 수행 업무분야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사법 개정과 별개로 현재 임상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 외 인력 등과의 직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로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직무의 고유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Park 등⁹⁾의 연구에 의하면 개원 치과의사들의 대다수가 기본치과진료준비, 환자 상담, 안내, 예방치과진료 업무, 구강방사선 사진촬영 및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담당하길 원한다고 하였으며, 전문기적인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현재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본연의 업무인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진료보조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사법과는 별개로 여전히 치과위생사는 진료보조를 주된 업무로 자리 잡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법정 치과위생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간의 혼란을 주게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법정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 등¹⁶⁾ 추후 의료기사법 개정 시 치과위생사의 인력간의 업무실태를 조사하고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 전반에 걸친 의료적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에 속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의 측면에서 법과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학계의 고민이 있어 왔다¹⁷⁻¹⁹⁾.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은 경력이 높을수록 의료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의료법 관련 세미나의 전체적인 참석비율은 낮았다. 하지만 의료법관련 세미나에 대한 참석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의료법 세미나를 추진하여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자리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치과위생사 업무가 도입될 당시, 일본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영역인 치아우식, 치주질환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치과기자재관리, 기구관리, 감염관리, 진료보조 등으로 규정되어있는 일본의 치과위생사 역할을 도입했다. 이에 다른 국가의 치과위생사 역할과 다르게 진료보조업무를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6항, 2015.12.29 시행)¹⁵⁾.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의료기사법으로 명시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은 선진국들의 치과위생사 업무^{9,20)}와 비교하였을 때 극히 제한적이고 협소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처음 치과위생사 제도가 도입된 미국은 치과위생사 역할을 임상가, 교육자, 옹호자, 관리자로 분류하였으며, 임상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면세마와 구강보건교육에만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점차 변경되어 주별로 치면세마,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주포대 부착, 치주포대제거, 봉합, 임시충전 방사선사진촬영, 국소마취, 불소도포, 실란트, 진단도형 등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었다²¹⁾.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치위생 박사과정 도입 등 치위생 학문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의 구강보건 수요가 높아진 시점에서의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의 정의와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인 예방진료가 강조되고 있는 임상적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법적업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업무와 직결되는 의료기사법의 개정에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의 제도처럼 전문분야가 확실한 치과위생사로 역할분담을 결정해야 할 것인지, 일본의 치과위생사 제도처럼 전반적인 진료보조 업무를 위주로 의료기사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치과위생사 전체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의료기사법의 인식도 측면만 본 것으로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였으며, 조사대상자를 편의 표본 추출하였으므로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사법의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추후 의료기사법 개정 시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의 연구이며,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측면에 관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기사법의 낮은 인식도와 역할분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업무, 치과위생사 외 인력의 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설문대상자 중 32.8%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안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64.1%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임상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분담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 67.2%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홍보부족이 가장 높았다. 치과위생사는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외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75.9%). 그 이유는 업무분장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법에 관련 세미나를 참석한 적은 없으나(88.6%) 의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들으러 가고 싶다(59.8%)는 비율은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다(77.0%).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화 와 의료기사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후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References

1. Mann NK: The history of dental hygiene in South Korea. J Hist Dent 59: 94-100, 2011.
2. Lee HS: Analysi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programs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9: 808-823, 2009.
3.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data: Demand and supply planning for the dental professions. Retrieved July 1, 2016, from <https://goo.gl/BCYf3p>(2003, April 24).
4.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A study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ental hygiene discipline in Korea. Retrieved July 01, 2016, from <https://goo.gl/Fx0xa4> (2014, May 15).
5. Kim SH, Jang JH, Oh SH: A study for the improvement

- subjects of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licensing examination. *J Dent Hyg Sci* 9: 353-360, 2009.
6. Won BY, Jung UJ, Jang JH: The demand for the change in Korean dental hygiene curriculum. *J Korean Soc Dent Hyg* 15: 161-169, 2015.
 7. Han SY, Kim NH, Yoo JH, Kim CS, Chung WG: Current status of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J Dent Hyg Sci* 9: 271-288, 2009.
 8.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Dental hygiene education curriculum. Retrieved July 1, 2016, from <http://www.kdha.or.kr/introduce/dentalhygienist.aspx#introduce>(2015, January 1).
 9. Park JH, Kim MS, Cho JW: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role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34: 88-97, 2010.
 10. Lee MS, Lim HJ: The factors of oral health beliefs on scaling perform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consumers. *J Korean Soc Dent Hyg* 15: 31-38, 2015.
 11. Ku IY, Park IS, Ku MJ: The comparison of the subjects' oral health state who were benefited from the elderly scaling care service program. *J Korean Soc Dent Hyg* 9: 593-605, 2009.
 12. Cho YS: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J Dent Hyg Sci* 11: 135-154, 2011.
 13. Sung MH: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7: 90-98, 2010.
 14.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 works. *J Korean Soc Dent Hyg* 8: 161-175, 2008.
 15.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s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 site: Medical technicians. Retrieved August 30, 2016,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5294#0000>(2011, November 16).
 16. Ahn YS, Shin SJ, Jung SH, Lee YS, Lim DS: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and turnover trend among dental hygienists and assistant nurses in dental clinics. *J Koran Acad Dent Health* 30: 303-315, 2006.
 17. Park EJ, You MS: A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Dent* 56: 93-100, 2004.
 18. Jung JO, Song KS: A study on job stress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J Dent Hyg Sci* 8: 305-312, 2008.
 19. Kwon JY, Lee SY: Relationship of between task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ntribu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6: 302-309, 2016.
 20. Kim NH, Jang SO, Jun HS, Kim YN, Chung WG: Comparison of idea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between Korea and America. *J Korean Soc Dent Hyg* 6: 194-199, 2006.
 21. Kim HM, Lim SR, Bae HS: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14: 276-286, 2014.